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나216272(본소), 2020나21628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소유권확인]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최미현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7.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137884(본소), 2020가
단128992(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본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E(소재지: 경기 가평군 F)에 관하여 체결된 2019. 7. 1.자 포괄 양도양수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포괄 양도양수계약에 기초한 계약금 100,000,000원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줄의 ‘피고들에게’를 ‘원고들에게’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은 ‘2020. 3. 31.까지 중도금이 23% 미만으로 입금된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금 100,000,000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10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감액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20. 3. 31.까지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제2조 바항에 따라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귀속되는 계약금 10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라 할 것인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이 정한 100,000,000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관한 매매대금은 합계 1,275,000,000원인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계약금 100,000,000원은 매매대금의 1/12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2) 앞서 본소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들에게 ①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등기부에 등재할 의무, ② 원고들에게 법인인감도장을 교부하고 법인계좌 관리권을 양도할 의무, ③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회사에 우발채무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불성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후인 2019. 7. 초순경 H(피고 C의 아들)이 I(원고 B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등 경영 관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모습만이 확인될 뿐이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나. 먼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지확인인 반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9.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과다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채무 부존재확인인 반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본소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반소는 본소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